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2. 12 선고 2023가단64061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지은, 이준한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준

변 론 종 결 2023. 11. 14.

판 결 선 고 2023.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분양대행사 소속 C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한 전화권유를 받고, 2022. 1. 17. 피고와 D역에 건축 예정인 오피스텔 E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계약금 10,000,000원을 입금하고, 2022. 1. 23.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을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나머지 계약금 71,745,900원을 지급하였다. 이는 방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인 2022. 1. 24. 분양사무실을 찾아가 분양대행사 소속인 F 팀장 및 G 본부장에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철회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81,74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1)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2) 갑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홍보 등을 담당한 분양대행사 직원 H은 2022. 1. 17.경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청약을 권유한 사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 1. 23.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나머지 계약금 71,745,9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공급계약서의 날짜는 2022. 1.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4, 5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비추어 실제 계약체결일은 2022. 1. 23.이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 등이 구비된 날짜가 2022. 1. 24.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전화권유로

청약을 유인하고 원고로 하여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도록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갑 제6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음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22. 1. 24. 모델하우스를 다시 방문하여 분양대행사 직원인 F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사실, 이에 분양대행사 직원인 F와 I은 이 사건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23. 3. 10.경 피고에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즈음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방문판매법 제8조는 청약철회의 방식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서면을 통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만 효력발생일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는 점(방문판매법 제8조 제4항)을 위 사실에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록 청약철회라고 명확히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분양대행사 직원에게 분명히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구두로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의사표시로 이 사건 계약은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금 81,745,9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인 2022. 1. 28.부터(방문판매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 갚는 날까지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진